

##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합치 조치

### 폐루의 유보목록

#### 서설

1. 이 부속서의 폐루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1 목부터 나호 5 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폐루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 1 절에서는, 제 12.9 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폐루의 기존의 조치
    - 1) 제12.2조(내국민대우)
    - 2) 제12.3조(최혜국대우)
    - 3)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2.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2.8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2.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폐루가 제12.2조(내국민대우), 제12.3조(최혜국대우),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2.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2.8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 4 항에 규정된 대로, 제 12.9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 2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 12.9 조제 2 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2.9조제 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2다(구체적 약속)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2.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폐루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2.2조(내국민대우) · 제12.3조(최혜국대우) ·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 또는 제12.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대우) · 제9.4조(최혜국대우) 또는 제9.7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제 10.2 조(내국민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2 나(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제 12.5 조제 1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두주

1. 이 유보목록에 나열된 하위분야에 대한 이 협정에 따른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폐루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폐루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sup>1)</sup>
3. 제 12.9 조(비합치조치)제 1 항다호는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예를 들면, 유한책임 파트너십 및 유한책임을 지는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폐루에서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지점 및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 제1절

###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2.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 <i>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i> ),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
유보내용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페루 내에 지점으로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은 그 지점에 일정 자본을 배정하여야 하며, 그 자본은 페루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페루가 부과할 수 있는 제12.10조(예외)제1항에 합치하는 조치에 더하여, 그 지점의 운영은 페루 내에 위치한 그 지점의 자본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2.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 <i>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i> ),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
유보내용	보험 또는 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페루 내에 지점으로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은 그 지점에 일정 자본을 배정하여야 하며, 그 자본은 페루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페루가 부과할 수 있는 제12.10조(예외)제1항에 합치하는 조치에 더하여, 그 지점의 운영은 페루 내에 위치한 그 지점의 자본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법령 제093-2002-EF호에 의해 승인된 증권시장법(*Ley del Mercado de Valores*)의 통합문서:  
제280조, 제333조, 제337조 및 제17차 최종 조항

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 제136조 및 제296조

유보내용 폐루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폐루 영역 내에서 일차 또는 이차 공모된 채무증권은 폐루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그 금융기관 및 채무증권은 기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적 평가에 추가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2.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i>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i>),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p> <p>농축산은행 설립법(<i>Ley de creación del Banco Agropecuario</i>), 법 제27603호</p> <p>개발금융공사(COFIDE) 설립법(<i>Ley de creación de la Corporación Financiera de Desarrollo (COFIDE)</i>), 법령 제208호 및 법 제25382호</p> <p>국립은행 설립법(<i>Ley de creación del Banco de la Nación</i>), 법 제16000호</p> <p>법 제28579호, 내 읍 기금</p> <p>최고 법령 제157-90-EF호</p> <p>최고 법령 제07-94-EF호 및 그 법령의 개정</p> <p>유보내용</p> <p>폐류는 하나 이상의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 제한 없이 특혜 또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융기관이 정</p>

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소유된 경우에 한한다:  
개발금융공사(COFIDE), 국립은행, 농축산은행, 내 집 기금, 지역저축 및 대출은행 및 국민저축은행

그러한 특혜의 예는 다음과 같다<sup>2)</sup>:

국립은행 및 농축산은행은 위험분산을 요구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저축 및 대출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사전에 설립된 절차에 따라 압류한 담보물을 직접 매각할 수 있다.

---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비합치 조치가 이 유보목록의 제 1 절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폐루가 명시된 기관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특혜 또는 배타적 권리가 인용된 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양해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2.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최고 법령 제093-2002-EF호에 의해 승인된 증권시장법(<i>Ley del Mercado de Valores</i>)의 통합문서:</p> <p>제130조, 제167조, 제185조, 제204조, 제223조, 제259조, 제269조, 제270조, 제302조, 제324조 및 제17차 최종 조항</p> <p>법령 제862호, 투자기금 및 그 관리회사에 대한 법(<i>Ley de Fondos de Inversión y sus Sociedades Administradoras</i>) 제12조</p> <p>법 제27635호에 의해 수정된 상품거래소법(<i>Ley sobre Bolsas de Productos</i>), 법 제26361호: 제2조, 제9조 및 제15조</p> <p>법령 제22014호 제1조</p> <p>최고 법령 제054-97-EF호에 의해 승인된 개인연금기금법 통합문서(<i>Texto Único Ordenado de la Ley del Sistema Privado de Administración de Fondos de Pensiones</i>), 제13조 그리고 최고 법령 제004-98-EF호에 의해 승인된 개인연금기금법 통합문서 규정(<i>Reglamento del Texto Único Ordenado de la Ley del Sistema Privado de Administración de Fondos de Pensiones</i>), 제18조</p>
유보내용	증권 또는 상품 시장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금

기금 운용자를 포함하여 자산 운용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페루 내에서 설립된 금융 기관은 페루 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페루 내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은 지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설립될 수 없다.

##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

유보내용 폐루 내 금융기관 또는 그 금융기관의 지점이 파산할 경우, 폐루에 주소를 둔 채권자가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의 폐루 내 자산과 관련하여 법적 우선권을 지닌다.

## 제2절

###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2.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서비스 공급 관련, 폐루는 제12.4조가호2목 및 3목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법령 제024-2002-MTC호에 의해 승인된 법 제27181호 및 그 규정
	최고 법령 제03-98-SA호에 의해 승인된 법 제26790호, 보건 분야 사회보장의 현대화에 관한 법( <i>Ley de la Modernización de la Seguridad Social en Salud</i> ) 및 그 규정
유보내용	페루는 "교통사고 의무보험" 및 "위험직종 보충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의 페루 국외 취득을 제한하거나 그 의무 보험을 페루 내 설립된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제한은 부속서 12나(국경 간 무역)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보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